

# 배우자 등의 폭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에게



치바현경찰

# ~경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~

## 피해신고를 하고 싶다

배우자 등의 폭력 등은 피해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우자 등의 신병을 구속하는 등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##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다

배우자 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피난 장소(쉼터 등)에 입소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자립지원을 하는 기관에 인계합니다.

##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경찰이 배우자 등에게 경고를 해 달라

당신이 "앞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배우자 등에게 경고를 해 달라"고 요망하면 경찰에서 배우자 등에 대하여 지도 경고를 합니다.

## 피난처를 알지 못하게 하고 싶다

당신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행방불명자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## 기타...

- 배우자 등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명령제도
-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관계기관 등이 있습니다.

# 재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

## 자신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

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피난하지 않고 피해신고서 제출을 주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례도 있습니다.

- 이 정도 폭력이면 참을 수 있다
- 늘 일어나는 일이라 괜찮다
-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좋은 사람이니까
- 나만 참으면...

등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.

※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.

## 안전을 최우선으로, 미리미리 대책을 세운다

한번 폭력을 당하면 폭력은 심해지기 때문에 신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건화나 일시 피난(셸터나 상대방이 모르는 친족 집 등) 등 대책을 일찍 세우도록 합시다.

## 친족 및 친구에게도 도움을 구한다

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당신을 가장 걱정해 주는 친족 및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해 봅시다.

## 당신이 해야 할 일

- 피해신고서 제출에 대비하여 폭력을 당한 일시, 장소, 상황 등의 기록 및 진단서를 보관해 둡시다.
- 생명, 신체에 대한 협박도 보호명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화(문자, 이메일, 편지 등은 보존)해 둡시다.
- 스토키 규제법에 의한 조치에 대비하여 전화, 문자, 이메일의 내용 및 수신내역을 보존하는 등 스토키 상황을 기록해 둡시다.

# 보호명령제도

## 보호명령이란

배우자 등으로부터 폭력 및 생명 등에 대한 협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인하여 그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 신청에 따라 재판소가 내리는 명령

##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곳

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주소 및 거처, 폭력 또는 협박이 행해진 장소를 관할하는

지방법원

##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폭력

- 배우자 등의 신체에 대한 폭력
- 생명 등에 대한 협박

## 보호명령의 종류

- 퇴거명령(유효기간 2 개월간)
  - 배우자 등에 대하여 동거하는 주거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하는 것
- 접근금지명령(유효기간 6 개월간)
  -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
  - 당신과 동거하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
  - 당신의 친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
  - 전화, 문자, 이메일 등을 금지하는 명령

보호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있습니다.

메모란

경찰에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 등에 연락하십시오.